

#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박태신** 촉탁변호사  
법무지원단

## 1. 들어가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스마트기기, 거리 및 각종 건물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장치 등 하드웨어와 모바일 인터넷, SNS, 클라우드 등의 인터넷서비스의 결합이 가져온 디지털환경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비구조화된 광범위한 데이터의 축적 및 위 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데이터의 양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타바이트(ZB, ZettaByte)<sup>1)</sup>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그 처리기술과 함께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다.

빅데이터는 생성영역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생성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의 빅데이터의 경우 민간에서 생성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지만 그 활용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필요하다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보건의료영역의 경우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강제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만 축적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많으므로 공공기관에 축적된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민간부문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사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생성된 빅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3. 7. 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1) 1ZB는 약 1조GB(Gigabyte)에 해당한다.

위 법률은 2013. 10. 3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한 빅데이터의 경우 개인의 건강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보건의료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현행 법령의 규정내용과 해석·적용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사항, 공개 및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 2. 공공부문 빅데이터와 관련한 논의사항

### 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sup> 즉,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것인데,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제공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데이터 품질관리나 형식의 표준화, 플랫폼 통일 등의 데이터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 민간부문의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연계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 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

2) 「공공데이터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교통, 기상, 공간, 복지, 보건, 식품, 관광, 환경 등 국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스마트산업의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의무를 부여하며,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행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444&lsId=&efYd=20131031&chrClsCd=010202&urlMode=lsEfnlR&viewCls=lsRvsDocInfr#0000>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유럽은 「EU 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정비하였다. 한국은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sup>3)</sup>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여 왔다.

### 3.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가. 보건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개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는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sup>4)</sup>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sup>5)</sup>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규율한다.  
 4)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정보'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sup>6)</sup>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규정하고 있다. 위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강화된 보호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한 것이다.<sup>7)</sup>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인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의미하므로 보건의료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는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건강에 직접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건의료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보는 직접적인 건강에 관한 정보 외에도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 나. 보건의료정보의 특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7)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건강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민감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그 주된 요소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보건의료정보는 정보주체와의 밀접성이 강하고 신체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일신전속성이 강화되어 있고, 그 내용이 주로 개인의 신체나 병력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개될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그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의 축적에 오랜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술연구 등의 2차적 이용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의료 분야는 여러 진료과목의 의료인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 외에도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을 보조하는 인력, 수납 및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 간 상호의존성이 높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기관 및 급여비용 지급기관 등이 다수 관여하고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수의 관련자에 의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 다. 보건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 1)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는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이나 감사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해석·적용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2013. 12. 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공개된 개인 정보',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위 각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3. 12. 30. 위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3. 19. 위 「가이드라인(안)」을 일부 수정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이하 「가이드라인(수정안)」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sup>9)</sup> 이에 대해, 위 시민단체들은 2014. 3. 25. 「가이드라인(수정안)」은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 원안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4. 7. 30. 2014 의결 제16호로 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가이드라인(안)」 관련 진정 건에 대해 빅데이터는 경영 혁신 및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는 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처리되는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

9) 제3조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덧붙여 단서로 '다만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공개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 목적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생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서에서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예외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1항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조합·분석·처리하는 경우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인정보자기결정권<sup>10)</sup>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이드라인(수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를 달리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몇 가지 예외사유에 한정하여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4조 등)은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됨에도, 「가이드라인(수정안)」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용내역정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기만 하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가이드라인(수정안)」의 규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정보의 수집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개인정보 생성 및 내부이용 역시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수정안)」은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정보통신망

10) 현재 2005. 5. 26. 99헌마513 등[판례집 17-1, 668, 682-682]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법」 제24조의2, 제22조제2항제2호, 제3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집에 대한 동의와 별개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여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4)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

##### 가) 공개와 보호의 긴장관계 및 조화 필요성

포괄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이용을 위해 공개하는 것과 그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긴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개와 보호라는 가치 모두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거나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수정안)」의 성격

위 「가이드라인(수정안)」은 적용범위를 특정 영역이나 민간부문 빅데이터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가이드라인(수정안)」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구체적 지침의 마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빅데이터 이용의 관점에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보인다.

##### 다) 공개와 보호의 조화를 위한 노력

보건의료정보의 공개와 이용이 시급하고 현실적 필요성이 긴요하다 할지라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넘어서서 그 공개와 이용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보건의료정보의 공개 및 이용이라는 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경직되어 있다면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 동



의 요건을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넘어서 완화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고도의 식별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개인정보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재검토 등과 같은 개인정보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은 엄격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의 거부를 요구하는(Opt-out)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4. 나가며

빅데이터 환경에서 민간부문이 가지지 못한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이용은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이용에 치중할 경우, 또 다른 소중한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건의료정보의 공개 및 이용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긴장관계에 있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단, 그러한 작업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의 명문규정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작업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한국의 개인정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동의요건의 현실화 등과 같은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제정에 대한 진정서, 2013. 12. 30.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013. 12. 30.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014. 3. 25.  
김보라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국감이슈연속 토론회, 2014.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서면회의], 2014. 7.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4 의결 제16호(2014. 7. 30.),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관련 진정 건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2013. 12. 18.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 2014. 3. 19.  
송태민, 일본의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210:89-99  
송태민, 우리나라 보건복지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 방안,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23(3):56-73  
신영진,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추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3(3):90-105  
심우민,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시행과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심우민,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심우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  
윤미영, 권정은, Big Data 글로벌 선진 사례:빅데이터로 진화하는 세상,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이시직,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보통신방송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26(3):1-20  
이한주,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 2012;20(2):267-29  
전영주, 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의료정보보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17(12):251-258  
정용찬,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정용찬, 빅데이터 활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555&cid=42171&categoryId=42183>  
최경진, 정준현, 구태언, 지성우, 김도승,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홍연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4;25(4):769-777